

의안번호	제412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10월 4일

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41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10월 4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행정사법」 제25조에 따라 시·도지사는 관할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- 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정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,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연수교육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「행정사법」 제25조에 따른 행정사 연수교육
- 위탁기간 : 2024. 1. ~ 2025. 12.
- 수탁기관 :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23조제5항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
- 수탁자 선정방식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름
- 소요예산 : 없음
- 세부내용
 - 행정사 연수교육 기획·운영
 - 연수교육을 총괄하는 책임자와 교육 수행 인력 확보
 - 교육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·운영
 - 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비 관리 계획
 - 교육 실시 후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
 - 기타 연수교육에 관련된 사항

○ 향후 추진계획

- 수탁기관 공모·선정 : 2023. 10. ~ 11.
-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공고 : 2023. 11. ~ 12.
- 위탁운영 실시 : 2024. 1. ~ 2025. 12.

3. 참고사항

가. 행정사 실무·연수 교육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

- 「행정사법」 제25조
-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23조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

행정사 실무·연수교육 민간위탁 추진계획

1 추진근거

- 「행정사법」 제25조
-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23조, 제25조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5조

2 추진목적 및 방침

- 신규 및 등록 행정사의 자질 및 업무 수행능력 향상
-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내실있는 행정사 실무·연수교육 실시

- 실무교육 :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
(기본교육 20시간, 실무수습교육 40시간)
- 연수교육 : 행정사 업무를 하고있는 자가 2년마다 16시간씩 받아야 하는 교육

3 위탁개요

- 위탁대상 : 「행정사법」 제25조에 따른 실무·연수교육
- 위탁기간 : 2024. 1. ~ 2025. 12.
- 수탁자 선정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없음

※ 교육생이 수탁기관에 교육비 납부(실무교육 30만원, 연수교육 8만원 / 2023년 기준)

○ 세부내용

- 행정사 실무·연수교육의 기획·운영
- 교육 총괄 책임자와 교육 수행인력 확보
- 교육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·운영
- 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비 관리 계획
-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
- 기타 실무·연수 교육에 관련된 사항

4

추진일정

① 추진계획 수립	·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	'23. 9.
② 의회 동의 및 행안부장관 승인	· 연수교육 : 의회 동의(자치사무) · 실무교육 : 행안부장관 승인(위임사무)	'23. 10.
③ 수탁기관 모집	· 수탁기관 모집 - (방법) 공개모집(도 홈페이지 공고) - (자격)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23조제5항에 해당하는 기관	'23. 10.~11.
④ 수탁기관 심사	·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- (구성) 6~9명 정도 - (심사) 전문성, 사업계획 등	'23. 11.
⑤ 협약 및 공증	·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	'23. 11.
⑥ 교육계획 공고	· 실무·연수계획 공고(30일 이상)	'23. 12.
⑦ 교육개시	· 행정사 실무·연수교육 실시	'24. 1.

5

세부 추진계획

1 도의회 동의 및 행정안전부장관 승인

- 추진근거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제1항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추진일정

- 연수교육 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 : '23. 10. 임시회
- 실무교육 위탁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: '23. 10.

2 수탁기관 모집공고

- 추진근거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제2항

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- 모집기간 : '23. 10. ~ 11.

- 공고방법 : 도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(15일 이상)

- 신청자격 :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23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

- 행정사회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대학 중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

3 수탁기관 선정

- 추진근거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제1항

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- 선정방법 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
 - 개최시기 : '23. 11.
 - 구성인원 : 9명 이내
 - 심사항목 : 수탁기관의 인력·기구·시설, 전문성, 사업계획 등

4 협약체결 및 공증

- 추진근거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9조

제9조(계약의 체결)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- 체결시기 : '23. 11.

5 교육계획 공고

- 추진근거 :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23조제3항, 제7항

제23조(행정사의 교육)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- 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- 공고시기 : '23. 12.

1 추진근거

- 추진근거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2

2 검토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견	비고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	○ 행정사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회 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	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사 실무·연수교육 운용을 위하여 자격사 관련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	
③ 경제적 효율성	○ 별도의 위탁 비용은 없으며 , 수탁기관에서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받아 운영할 예정	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행정·공공제도 분야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행정사 교육의 전문화 추진	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	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 를 통해 투명성 제고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(지휘·감독)	
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	○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에 대한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	

□ 행정사법

제25조(행정사의 교육)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행정사의 사무소(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행정사법 시행령

제23조(행정사의 교육)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.

1. 행정사회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(행정학과 또는 법학과의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한다)

제25조(권한의 위임)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
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